

# 기상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장 옥\*\*

## 차 례

- I. 서론
- II. 기상법의 연혁 및 특징
- III. 기상법의 문제점
- IV. 기상법의 개정방향
- V. 결론

### [국문초록]

오늘날 기상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상 및 기후관련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 정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상 관련법제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기상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기상청의 효율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상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상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기상법」이 기상기본법의 성격과 기상업무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하나의 성격에도 충실하지 못한 불완전한 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상법」개정안에서 기본법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기상업무법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즉 「기상법」 제3조 다른 법과의 관계를 적극적 규정방식으로 변경하여 기본법성을 명확히 하고, 「기상법」의 기상 업무에 관한 장을 새로이 두고 그 장에 기상업무별(항공기상, 해양기상, 수문기상,

\* 이 논문은 2011년 국립기상연구소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413-B00026)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우주기상 등) 유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상관련 정보 및 방재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기상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관련 부처나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상관련규정들이 여러 부처 소관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부처 간 업무의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재정리하여 「기상법」에 통일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 훈령 및 지침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 행정업무처리의 지원에 해당하는 사항은 훈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기상청 업무 관련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인 경우 법령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 I. 서론

오늘날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상 및 기후 관련 예측 시스템의 체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기상·기후 관련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서비스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첫 단계는 기상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사전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기상정보에 대한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기상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기상청의 기능 및 위상이 재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기상, 기후 관련 예측뿐만 아니라 지진 등 그 외의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 업무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기상 및 기후 관련 기본적인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 기상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상청의 기능 및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과거 50여년 동안 기상·기후 예측의 기술적 업무에만 치중한 나머지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 수립에는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였다. 이러한 기상·기후관련 법정책에 대한 기상청의 소극적 태도는 기술적 역량과는 무관하게 기상청의 업무범위를 축소 내지 효율적인 기상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는 기상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늘어나는 기상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개정하고,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등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상 관련법제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상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기상청의 효율적 업무수행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 소관 법령에서 기상 및 기후 관련 규정들과의 충돌 때문에 기상청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침범당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행 기상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상청이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기상관련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상법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기상법의 연혁 및 특징

### 1. 기상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

기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1년 「기상업무법」을 제정하면서 우리나라에 기상관련법체가 등장하게 된다. 이 「기상업무법」은 일본의 「기상업무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 많은 부분 일본 「기상업무법」과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그 후 40여 년간 「기상업무법」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해오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외의 악기상 및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증대하게 인식되면서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상관련법의 재정비가 강하게 요구되었다. 이에 2005년 제11차 개정에서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하고, 기존의 「기상업무법」하에 규정하였던 기상관측의 표준화와 관련된 사항들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규정하게 되

1) 국내 근해 또는 원양에서 조업중인 선박의 3/4이 일본 기상청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조선일보, 2011. 3. 2자, “한국 선박들, 일본 기상청만 바라본다”)

었다. 2005년 전면 개정 이후 2011년 까지 4차례의 「기상법」개정이 있었지만 법 내용에 대한 변화는 없었고 타법개정에 따른 사항 변경 내지 자구 수정에 그치고 있다. 다만 2009년 제15차 개정에서 「기상산업진흥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기상관련법제에 있어서 기상3법의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기존의 「기상법」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였던 기상사업자의 정의가 삭제되고, 기상산업 및 기상사업에 관한 사항들이 제외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현행 기상법의 특징

### (1) 기상기본법으로서의 기능

2005년 개정 「기상법」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행 「기상법」은 그 이전의 기상업무법과 비교해볼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상관련법제에 있어서 「기상법」이 기본법으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현재 및 미래의 국가기상행정에 있어서 대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제1장 총칙의 장에서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의 책무), 제2장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등이 새롭게 조문이 추가되거나 새 장이 신설되었다.

기본법은 관련된 법률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임을 천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sup> 「기상법」의 경우에도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기상관련법제에 있어서 기본법으로 기능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방식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sup>3)</sup>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상론하기로 한다.

또한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계획의 책정을 정부의 의무로 부과하는 계획법적 성격을 규정하거나 국가나 국민에게 강제력없는 책무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sup>4)</sup> 「기상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보건의료기본법 제9조 참조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법」의 경우에도 국가의 책무(제4조)에 관한 규정과 제2장에서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장들은 그러한 취지에서 기본법성을 드러낸 조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 (2) 기상업무법으로서의 기능

현재 기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을 살펴보면 기상청 소관법률로서 「기상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의 3법이 있고, 그 외에 「하천법」, 「지진재해대책법」 등 타 부처 소관법률에서 일부 기상관련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상법」에서 기상의 정의, 기상업무의 범위 및 기상청의 관련 업무 등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중심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법」이 국가기상행정과 관련한 업무법으로서 기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2조에서 기상현상이란 기상, 지상 및 수상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sup> 그리고 기상(氣象)은 대기의 여러 현상을 의미하고<sup>6)</sup> 지상(地象)은 지진 또는 화산현상과 기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지면 또는 지중의 여러 현상을 의미하며<sup>7)</sup> 수상(水象)은 기상 또는 지상에 밀접히 관련되는 내륙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sup>8)</sup>고 정의하는 한편, 이들 기상현상과 관련된 사항들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하고, 이들 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기상청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sup>9)</sup> 즉 이 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기상현상과 관련된 사항이면 지표면, 지하, 지상, 해양, 하천 등 공간적 범위를 초월하여 통합적으로 관측하고 예보할 수 있도록 그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는 기상현상을 관측함에 있어 장소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국가기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상현상을 관측하고 예보하는 전통적인 업무 외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4) 김현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법연구 제39집 제2호, 2010/12, 492-493면

5) 기상법 제2조 제4호 참조

6) 기상법 제2조 제1호 참조

7) 기상법 제2조 제2호 참조

8) 기상법 제2조 제3호 참조

9) 기상법 제2조 제5호, 제8호 가, 제9호 참조

및 영향을 조사하고,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를 예측하는 업무<sup>10)</sup>와 기타 기상현상 및 기후에 대한 통계·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하는 등의 부대업무<sup>11)</sup>들을 기상업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3)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수립기관으로서 기상청의 위상 제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체결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된 이후 각 국은 관련 법령 개정 및 제정을 통해 활발하게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상 및 기후 변화를 우선적으로 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관인 기상청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2005년 개정 「기상법」에서 기후변화 감시에 대한 기상청의 의무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즉, 「기상법」 제20조는 기상청장에게 기후감시, 기후에 관한 연구 및 예측능력의 향상, 기후관련 정보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기상청장은 기후감시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구대기 감시·관측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주기적으로 공고 하도록 하며, 기후전망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기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기후전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2)</sup>

## Ⅲ. 기상법의 문제점

### 1.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약화

법 제3조가 「기상법」이 기상관련 법제에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하는 주요한 근거가 됨은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다른 기본법과 비교해볼 경우 「기상법」이 가지는 기

10) 기상법 제2조 제8호 나 참조

11) 기상법 제2조 제8호 다 참조

12) 기상법 제21조 내지 24조 참조

본법으로서 가지는 위상이나 법적 지위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본법 형태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sup>13)</sup>과 「보건의료기본법」<sup>14)</sup>을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1항에서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함으로써 타 법과의 관계에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타 법에 비해 우월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sup>15)</sup>, 이 조문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관련 법령을 입안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중요한 원칙법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보건의료기본법」은 법제9조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해서는 기본법성을 천명함과 동시에 타 법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시 이 법을 지침으로 삼아 고려하여야 함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상법」의 경우에는 타 법과의 관계에서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냄과 동시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하위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기상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그 내용이 「기상법」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내지 이념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타 법이 우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규정은 기상관련법체에 있어서 「기상법」이 기본법으로서 기능을 약화시키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

## 2. 기상업무법으로서의 기능 약화

「기상법」 제1조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기상법」은 기상에 관한 필요하고

13)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념 지표인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법 정책에 있어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4) 보건의료기본법은 그동안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개정되어 오던 보건의료 관련 법령들이 법제간의 상충하거나 유기적 연계가 쉽지 않았던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0년에 제정된 기본법이다.

15)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타 법률과의 충돌문제가 생길 경우 법률이라는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우선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도 기본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기상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고, 「기상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기상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부 타 부처 내지 기관과 업무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효율적인 기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기상법」은 전반적인 내용이 기상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기상업무인 관측,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들 중심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다양한 기상서비스 업무, 특히 최근 업무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응용기상영역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어 효율적인 기상업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기상법」의 불완전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 소속하에 기상청을 둔다’라고 되어 있고, 기상이 어떠한 업무인지, 어떠한 범위까지 포괄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상청의 법적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상청 소관법률 특히 「기상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데, 「기상법」에서도 기상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조의 정의 규정 중 제8호의 단 한 개의 호에서 규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sup>16)</sup> 특히 다양한 기상현상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를 기상현상의 관측 및 예보로 포괄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다른 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 영역간의 다툼을 낳을 소지가 많다. 또한 세계기상기구(WMO)의 기상학을 분류하여 그 학문분야에 따라 위원회를 두고 있다<sup>17)</sup>. WMO의 분류와 기상학 학문영역을 고려할 때 관측 및 예보, 기후, 수문(水文)기상<sup>18)</sup>, 항공기상, 해양

16) 기상법 제2조(정의)

8. “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기상현상의 관측 및 예보

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다.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17) 세계기상기구에 다음의 8개 분과위원회가 있다. 기초체계위원회(Commission for Basic Systems :CBS), 관측위원회(Commission for Instruments and Methods of Observation :CMO), 수문위원회(Commission for HYdrology :CHy), 대기과학위원회(Commission for Atmospheric Science :CAS), 항공기상위원회(Commission for Aeronautical Meterology :CAeM), 농업기상위원회(Commission for Agricultural Metelogy :CAGM), 기후학위원회(Commission for Climatology :CCI), 해양기상위원회(Joint Wmo-Ioc Commission for Oceanography and Marine Meteorology) ; [http://www.wmo.int/pages/prog/amp/mmop/jcomm\\_partnership\\_en.html](http://www.wmo.int/pages/prog/amp/mmop/jcomm_partnership_en.html)

기상, 농업기상 등 다양한 기상현상에 대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정의규정으로서는 부족하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점은 기상청의 소관업무가 기상업무라는 개념으로 파악되어 정의규정에서 정의될 성질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정의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사용하는 있는 개념을 일괄적으로 정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상업무는 법률의 규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기상청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상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관 업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기상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함에도 기상업무라는 개념으로 단지 정의규정에서만 개념 정의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 3. 기상업무영역별 문제점

#### (1) 항공기상 분야

항공운송의 증대에 따른 항공기상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법」에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고 다만 항공기상업무지침에서 항공기상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sup>18)</sup> 「기상법」에서는 제9조 내지 제10조의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과 항공기 탑승 관측을, 제14조 내지 제15조에서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와 그 통보를 규정하고 있고, 제37조에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항공기상업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정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수문기상학(水文氣象學)이란 수문학과 기상학의 경계영역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물의 보급원으로서의 비와 눈 등을 연구하는 기상학의 한 분과이며, 넓은 의미로는 강수에 관한 기상학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초기의 수문기상학은 강수와 하천유량과의 관계, 즉 유출분석도 취급하였으나 수문학의 연구가 진전되어 유출분석이 수문학의 중심적 과제가 된 다음부터는 강수와 증발산 등 대기와 지표면의 상호작용에 관한 물 순환 연구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강수량과 증발산량의 공간적 분포와 시간적 변화의 측정 또는 추정 등이 주요과제이며, 어떤 유역에서 일어나는 최대강수량과 확률강수량의 추정, 유역 내의 적설수량이나 면적강우량의 산출 등이 행해졌다. (김광식, 기상학사전, 연문사, 2009, 309면)

19) 항공기상 업무란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정구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항공기상청, 「항공기상업무지침」 제8차 개정판, 2010. 11, 1-1면).

## (가) 특수 관측자료의 요청

「기상법」에서는 제9조에서는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항공법」 제40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고 항공운송사업을 수행하는 항공기(기상법 시행령 제6조 내지 항공법 제2조 제31호)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정부규제완화 및 자율성 제고 정책에 따라 1998년 8차 개정에서 보고의무사항이었던 것을 완화하여 협조 요청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항공기상 업무에 있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현상 또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돌발적인 기상현상에 대해서 신속한 항공기상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 (나) '기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문제

「기상법」은 그 정의에서 '기상시설'을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예보시설, 통신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정하고 있으나(제2조 제13호), 「항공법」은 공항 내 기상관측시설을 공항시설에 포함시켜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마목). 그 결과 공항 조성 시에는 국토해양부가 기상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이후에 당해 시설을 기상청에 임대 또는 판매함으로써 그 이용 및 활용을 도모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낮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항공기상 업무의 영위를 저해하고 있다.

## (다)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의 문제

기상청은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상당국으로서 ICAO 협약 제 28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정보의 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y Organization: WMO) 역시 「항공기상서비스 비용회수를 위한 지침(Guide to Aeronautical Meteorological Services Cost Recovery)」 부속서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기상관서는 공항만 서비스하며, 연속적인 기상감시를 포함한 관측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항공기상관서의 모든 비용은 이용자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상법」도 항공기상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의 장에게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제1항).<sup>20)</sup> 그런데 문제는 하위법령인 「기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징수방법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상위규범인 법률에서 항공기상청장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권을 다시 하위 규범인 시행령에서 상급부서인 기상청과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측면이 있다.<sup>21)</sup>

이러한 법리적인 문제외에도 사용료 책정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2005년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기상청 고시 제 2005-1호, 2005. 5. 30)로 처음 징수된 이후, 2010년 개정을 통해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경우에 1회의 운항마다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착륙의 경우 5,820원, 통과비행의 경우 1,980원으로 정하고 있다.<sup>22)</sup>

그러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다른 외국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sup>23)</sup>. 영국, 미국 등의

20)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는 기상청의 주요 업무인 일반적인 예보 및 특보와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며, 그 성질상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에 해당한다. 수수료인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수료의 징수 여부는 국가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상법」 제37조 제1항은 항공 기상정보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정보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97다 21253 참조). 법제처, 법령해석례(2004. 12. 21) 참조.

21) 하위규범인 기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상위규범인 법률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당연무효로 여겨져야 하나 실무상에서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권은 기상청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고 있어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을 무효화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22) 기상청 고시 제2010-1호, 2010. 4. 19

23) 각국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사례

구 분	비용 징수 방법	징수규모
한 국	별도의 기상서비스 항목으로 징수	착륙의 경우 : 5,820원 통과비행의 경우 : 1,980원
영 국	항행서비스료에 포함 기상청과 민간항공국(CAA) NATS와 계약	항공기상정보 생산 및 소요비용의 106~107% : <b>약 450억 원</b> (2007년도 기준)

경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는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지는 않고 항행서비스료에 포함 되어 징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원으로 항공기상정보의 생산 또는 기상청 예산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항목으로 징수하는 경우로서 대표적으로 중국은 국내선 편당 약 60달러, 국제선 편당 180달러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하며 타 국가들도 50-100달러 내외나 항행서비스료의 70% 내외의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관련 부처 협조 부족<sup>24)</sup> 및 국내 항공사의 비용 증대 등을 이유로 인한 반대로 생산원가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국부의 유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항행서비스료에 포함 기상청과 민간항공국(DGAC)협정	연간 1, 350억 원 (프랑스 기상청 예산 대비 24.7% 충당)
독 일	항행서비스료에 포함 기상청과 민간항공국(LBA)협정	연간 3,800만 유로 (약 655억 원)
캐나다	항행서비스료에 포함 NAV CANADA	연간 3,000만 캐나다 달러 (약 258억 원)
중 국	항행서비스료에 포함 중국기상국과 중국민용항공총국간 계약	국내선 편당 60달러 국제선 편당 180달러 (항공기상서비스 예산 충당)
홍 콩	항행서비스료에 포함 민간항공국(CAD)을 통해 회수	연간 약 135억 원 (기상청 예산의 48.6%)
호 주	별도 기상서비스 항목으로 징수	연간 14,523,000 호주달러 (약 170억 원)
이 란	별도 기상서비스 항목으로 징수	국제공항착륙 시 톤당 5.075 달러 영공통과료 별도
우즈베키스탄	별도 기상서비스 항목으로 징수	50톤까지 100달러 51-100톤은 150달러 101톤 이상은 200달러
아르메니아	별도 기상서비스 항목으로 징수	이착륙시 57달러
아제르바이잔	별도 기상서비스 항목으로 징수	출발시 100달러
알제리	공항시설사용료에 포함	착륙료의 4%
덴마크	항공·항행서비스료에 포함	항행서비스료의 60-70%
아이슬란드	항공·항행서비스료에 포함	항행서비스료의 80-90%

<자료출처 : 2007년 세계기상기구(WMO) 설문조사, '08년 각국 세입예산(기상청 내부자료)>.

24) 기상법 시행령 제21조 ① 기상청장은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 정보의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을 고시하여야 한다.

## (2) 해양기상 분야

### (가) 해양기상 업무범위의 문제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영국, 일본, 호주 등)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현업 해양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온, 해류 등의 해양 예측정보를 중단기 기상예측능력 향상에 활용하고 또한 해운업, 수산업, 국방 분야 등 해양관련 수요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해양 관측망 구축과 운영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관측자료 부족으로 대기에 비하여 해양기상 및 해양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예측정보 생산 능력과 업무 개발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한 기술적 측면의 개발을 논하기에 앞서 「기상법」에서 해양기상 업무가 기상청의 업무범위로 명확히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업무에 있어서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즉, 「기상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의 정의에 따르면 “수상(水象)”이란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륙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양기상 업무가 기상청의 업무임을 유추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소관법률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수로조사의 업무범위에 해양기상을 포함하고 있어 업무 영역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sup>25)</sup>

### (나) 선박에 대한 예보 특보의 구체화 문제

해양기상과 관련하여 「기상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는 선박에 대한 예보 특보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이 시행령 제8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에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선박 운항에 필요한 해양 예보 및 특보 종류와 내용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 (3) 수문기상 분야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수문과 기상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수문과 기상의 접점인 수문기상업무에 대해 수자원 관리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기상청 간의 이견이 발

2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참조

생하고 있다. 즉 「기상법」 제2조 제3호 정의하고 있는 수상(水象)에는 ‘수문기상’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기상청 직제 및 기후업무규정에서 ‘수문기상 업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인 「하천법」에서한 “수문조사”<sup>26)</sup>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 직제에 의한 “홍수 및 갈수예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 영역에 대한 다툼이 있다.

#### (4) 우주기상 분야

우주기상은 우주 및 지상의 인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 못지않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공위성 및 전파통신 기술의 확대에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우주기상 현상은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제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기상 현상에 대한 감시 및 예측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 인공위성 및 전파통신 기술, 전자기술이 고도화되고 이에 대한 인류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주기상 현상으로 인한 위성이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우주기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 「기상법」에는 우주기상과 관련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4. 기상정보수집시스템 연계의 취약성

「기상법」에서 기상청장은 기상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기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상법 제12조). 그러나 이 규정은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특별한 강제수단이 없는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기상행정업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방재기상과 관련해서 국민의

26) 「하천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수문(水文)조사시설’을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경우 기상청의 예·경보 발령정보에 대해 전달기능을 가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그 시급성 및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확산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한다.<sup>27)</sup> 현재 기상청이외에 여러 공공기관에서 기상과 관련된 정보를 생성하고, 예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기상 관계법률에 의해 강수량, 증발산량을 측정하는 경우 외에도 하천법에 근거하여 수위, 유량, 유사량, 강수량, 증발산량을 측정하는 수문조사를 국토해양부의 고유한 업무로 보고 있다<sup>28)</sup>. 이 법을 통해 수문조사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기관에서 생성한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유사하게 기상청의 강수량 등의 예보와는 별도로 산림청에서 연속강우량, 시강유량, 일강우량 등을 근거로 산사태 주의 및 예보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의 교환 내지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법제화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sup>29)</sup>

27) 과학기술연구원, 국가방재기상체계최적화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03, 199면

28) 하천법 제17조(수문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구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하천시설의 설치, 각종 구조물의 설계,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流砂量) 및 하천구역의 강수량·증발산량과 하천구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이하 “수문조사(水文調査)”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률에 따라 수위·유량·유사량·강수량·증발산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수문조사로 본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강수량·증발산량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업무의 발전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9) 2011년 7월 25일에서 28일 사이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는데, 관련 공공기관의 협력체계 미비가 재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 5. 기타 기상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 등의 체계 부정합성

기상청 소관의 관련 법규들은 「기상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의 법률이외에도 각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이 있고, 행정내부적 규정으로서 상당수의 훈령·예규·고시가 있다.

오늘날 법률유보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요사항유보이론(또는 본질성이론)에 따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내용들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은 법규명령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아울러 법령과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이른바 '입법적 사항'인가 아니면 단지 행정내부의 조직과 운영을 위한 '내부적인 지침'인가 하는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이 행정법이론에 부합하는 것이다. 물론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행정규칙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행정규칙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기상관련법령 및 기상청 내부 규정을 살펴보면 법률이 아닌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도 내부 지침 내지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국가수치예보업무의 발전과 정책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수치예보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내부규정인 「수치예보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만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기상청 내부 규정에 불과한 「한국기후변화협약체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한국기후변화협약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협약체와 같은 조직은 범부처적인 조직으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규정에 의해 설립하도록 한 점은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기상청 내부 규정으로 되어있는 「기후업무규정」 제3조의 기후업무기본계획과 같은 사항들은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지진업무규정」의 경우에는 기상청의 중요한 관장업무로서 법적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

률에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내부규정으로만 용어뿐만 아니라 업무를 정의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 IV. 기상법의 개정방향

### 1. 기상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강화

「기상법」이 기상관련 법제의 해석이나 제·개정시에 근본적 지침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행 「기상법」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행 「기상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상법」 제3조의 법문에 충실 할 경우 기상업무에 관해서도 다른 법률이 「기상법」에 우선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이 기본법이라는 특별한 입법형식이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법이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효력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보건의료기본법」에서와 같이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는 기본법에 부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형식을 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기본법과 개별법 사이에 법적 효력의 우열관계는 없기 때문에 선언적이고 상징적 의미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 제·개정 과정에 있어서 기본법이 가지는 이념이나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그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부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상법」 제3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내용을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상법」이 기상관련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 규범이 됨을 적극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2. 기상업무 정의 및 범위의 구체화

「기상법」의 기본법적 성격의 명확화와 함께 기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

함으로써 기상업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상법」과 비교해 볼 때 외국의 기상관련 법에서는 그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독일의 경우에는 「기상서비스법」에서 기상청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항공기상, 농업기상, 수문기상, 해양기상에 대한 업무를 상세하게 구체화하고 있다.<sup>30)</sup> 일본의 경우에는 「기상업무법」에서 독일과 같이 명확히 그 업무영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상, 지상, 지동 및 수상에 대하여 관측, 예보 및 경보, 별도의 정보수집 등 3개 목으로 이를 세분화 하여 제시함으로써 관측과 예보 이외의 별도의 정보수집 또한 기상청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sup>31)</sup>.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기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총칙의 장에서 기상업무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즉 기상업무를 기상현상이라고 통칭하여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항공기상, 해양기상, 수문기상, 우주기상, 농업기상 등으로 기상학 업무 영역별로 세분하여 업무를 정의하도록 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처와의 업무영역과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쳐 부처 간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행령에서 규정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상법」을 재정비할 경우 크게 기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새롭게 신설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장에서 항공기상, 해양기상, 수문기상, 우주기상 등 각각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각 절의 내용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기상업무영역별 개선 방안

#### (1) 항공기상 분야

##### (가) 항공기상업무 정의 및 업무규정의 구체화

항공운송 환경변화와 급증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항공기상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

30) 김남철, 독일의 기상법제와 기상청의 역할, 기상법제와 기상청의 역할 포럼 자료집, 2011. 8. 30, 11면 참조

31) 김치환, 일본의 기상법제와 기상청의 역할, 전계 자료집, 13-18면 참조

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총괄기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상법」에 항공기상업무(Aviation Meteorological Services, AMS)의 정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항공기상업무에 대해서는 「항공기상업무 감독관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기상법 제14조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 등 국내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에 불과한 「항공기상업무 감독관 규정」은 항공기상청 신설 등에 따른 현재의 항공기상업무 수행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상법」 제2조의 기상업무의 정의 내에 이를 반영하여 개별 기상업무규정으로 항공기상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항공기상업무의 주무기관으로 기상청(항공기상청)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 및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나) 특수관측 자료의 보고의무화

항공기상 업무에 있어 그 대상이 항공기 또는 공항이고 기상청의 역할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있으므로,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현상 또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돌발적인 기상현상에 대해서 운항 중인 항공기에 보고의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것이 반드시 항공사나 기타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에게 규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여전히 「기상업무법」 제8조 제1항 내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는 항공기의 항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위해 특정지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비행구역의 기상상황까지 기상청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2)</sup> 따라서 항공기상 정보 및 해양기상정보는 생명 및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는 점에서 현행 「기상법」 제9조의 제1항의 규정<sup>33)</sup>을 기상청장이 선

32) 기상업무법 시행규칙 제6조는 i) 기상청장이 정하는 위치통보점을 통과하는 경우, ii) 기상의 상황이 다른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장이 인정한 경우, iii) 기상청이 항공기의 이용에 적합한 예보 및 경보를 실시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기상업무법 제16조에 따라 항공예보도를 교부받은 항공기에 대해 기상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상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할 때 선박 또는 항공기 소유자에게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규정 개정

현행 「항공법」상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항공기상정보사용료에 대해서만 협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항공법」상 다른 사용료 징수 규정과 비교해보아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즉, 「항공법」 제86조 제2항은 “「항공법」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그 사용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협의사항이 아닌 신고로 두고 있다. 즉, 동법은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사용료의 산정권한을 일임하고 있는 반면에 기상정보사용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타 기관의 업무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법」에서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개선·개정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거나 기상청장이 단독으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해양기상 분야

(가) 해양기상업무 정의 및 업무 규정 구체화

위험기상의 예측정확도 향상으로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고, 해운업, 수산업, 국방 분야 등에 선박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해양 감시 및 예측기술 개발과 정보 제공업무의

33) 기상법 제9조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해양감시와 예측정보 제공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국민과 선박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 업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상청에서 해양 감시와 예측정보 제공 업무를 명확하게 법제화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해양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국립해양조사원)와 농림수산식품부(국립수산과학원 등)의 해양 관련 업무와 중복 또는 충돌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해양 관계자에게 해양 예보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외국의 경우에도 해양 예측업무를 예보기관인 기상청에 담당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기상청에서 해양 예측업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이에 기상청은 해양 예측정보를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각 기관별로 그 정보를 활용하여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 조정 및 관련 기관 간 이해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양에 관하여 “수상” 등 그 업무범위와 관련한 법문의 명확한 해석은 물론 부처별 역할 및 추진방향에 대한 사전협의 규정을 둠으로써 업무영역의 충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수로조사와 관련하여 “해양기상의 관측”을 국토해양부 소관사무로 규정함으로써 기상청의 소관사무인 기상관측 가운데 해양기상 또는 수상(水象)에 대한 관측업무와 충돌할 여지가 있는데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정부조직법」상 부처 간의 소관업무의 충돌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에 조정 내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를 통한 조정을 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확한 해상기상정보 수집을 위하여 당해 수로조사를 통해 얻게 된 해양기상 관련 관측정보를 기상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획득된 해양기상 관련 정보를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조사 또는 활용하거나 기술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관련 예산의 중복과 행정의 낭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 (나) 선박에 대한 예보 및 특보의 구체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해양감시 및 예측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예보국 또는 해양기상과 업무에 해양 예보 및 특보관련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예보국 또는 해양기상과 업무에 해양 예보 및 특보 관련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비록 「기상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선박에 대한 예보 및 특보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보 및 특보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불일치하거나 무의미한 규정들을 포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령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황사’, ‘건조’, ‘폭염’과 같은 사항에 대한 예보 및 특보는 해양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는 큰 연관성을 지니지 못하다.

일본의 「기상업무법」은 선박에 대한 예보 및 특보와 관련하여 ‘해상예보(특보)’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예보구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해상의 기상, 화산현상, 해일, 고조 및 파랑의 예보(특보)”라고 비교적 간결하게 규정하고 있다(기상업무법 시행규칙 제5조). 따라서 일본과 같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해상의 기상, 화산현상, 해일, 고조 및 파랑 등으로 주요사항만을 명문화하거나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해양활동이 늘어가고 해양 감시 및 예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기상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의 해양 예보와 특보 규정을 항공예보의 경우와 같이 세분화(풍랑, 너울, 해일, 해상풍, 해무, 수온, 해류, 해빙 등)하거나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 (3) 수문기상 분야

#### (가) 수문기상 정의 및 업무 규정 구체화

수문기상은 기상학의 한 분야이므로 이에 관한 업무를 당연히 기상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행법령에서는 기상청의 업무인지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하천법이나 국토해양부의 직제규정 등을 통하여 수문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및 홍수 및 갈수예보를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문기상에 대한 정의와 수문기상을 포함하는 기상청의 업무에 관한 법조문 신설이 필요하다. 수자원 관리 유관기관의 수요에 부합하는 수문기상정보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상에 관한 일반법인 「기상법」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는 비온 후의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사후대응 업무를 수행하나 기상청은 돌발홍수 등의 사전대응을 위한 감시 및 예측업무 수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기상청은 수자원 관리 업무(수문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부합하는 수문기상정보 생산·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업무를 기상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국토해양부 등 수자원 관리 부처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 「하천법」상 홍수·갈수 예보 규정의 삭제

「하천법」 제2조를 비롯한 홍수 및 갈수·예보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에 관한 업무를 기상청의 업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천법」 제2조의 ‘수문(水文)조사시설’에 관한 정의규정에서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수문기상에 관한 자료는 제외된다)’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로 개정하고,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은 삭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천법」은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로서 개정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므로 국토해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홍수발생에 대한 예보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기상업무법은 ‘수방활동’과 관련하여 “수방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하천에 대해서는 수방에 관한 사무를 실시하는 국토교통대신과 공동으로 해당 하천의 수위 또는 유량을 나타내는 홍수에 대한 수방활동의 이용에 적합한 예보 및 경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4조의2 제2항), “수방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하천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지사(지방자치단체장)와 공동으로 수위 또는 유량을 나타내는 홍수에 대한 수방 활동의 이용에 적합한 예보 및 경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3항).

이처럼 홍수예보와 같이 강우량뿐만 아니라 하천이나 물의 유량을 관리하는 기관 및 자연재해의 경감 및 대책기관들과 연계 또는 정보교환이 필요한 업무에 한해서는 단일한 부처로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하더라도 개별 부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동으로 협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4) 우주기상 분야

조원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2010. 2. 26) 제정안인 우주기상업무법(안)<sup>34)</sup>은 우주 기상 업무를 기상청의 소관으로 하여 우주기상업무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우주기상 현상의 관측 및 발표, 우주기상 변화의 예보 및 특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주기상협의회 구성, 우주기상업무에 대한 연구개발, 우주기상업무의 국제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sup>35)</sup>

우주기상과 관련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기상법」개정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법 제2조 4호의 기상현상의 정의를 확대하여 기상, 지상, 수상 외에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이라고 규정하여 우주공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기상법」 제21조에서는 지구대기감시를 위하여 성층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입자상 물질 등을 관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관측의 범위를 성층권의 범위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더욱 더 그 개정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기상법」을 개정할 경우에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권한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상법」개정 시 우주기상업무 역시 항공기상, 해양기상, 수문기상 등과 같이 하나의 업무범위로 설정하여 우주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기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기상관련 정보 및 방재 체계 구축의 연계성 강화

기상현상과 관련된 재해, 재난 등에 대해 효과적인 방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1차

34) 제289회 국회 제2차 국회환경노동위원회(2010. 4. 16)와 제301회 환경노동위원회(2011. 6. 24)에 회부되어 심사보고를 거친 바 있음.

35) 기상 현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우주기상을 「기상법」에 규정하는 것 보다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우주기상과 관련한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한 후 우주기상업무법안과 같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우주기상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총괄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우주기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음.

적으로 기상현상에 대해 관측하고 예보하는 기상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방재기상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기상청의 기상정보수집활동에 있어서 범부처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상청장에게 기상정보 및 기상방재와 관련하여 정보 내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임의적 규정<sup>36)</sup>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상청장이 기상관련정보를 요청한 경우에 관련 부처나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상청은 방재기본계획 및 방재실행계획 수립과정에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계획수립을 위해 요구되는 기후정보 및 기상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간 재해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기상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기구화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재해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에서는 기상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5. 기타 기상관련 법령의 체계 정합성 제고

기상청 소관 법령 및 규정들을 재검토하여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과 하위법령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 특히 내규에 규정한 사항들 중에서 법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내규로 다루어진 사항이 있는지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문제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문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의 경우에 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다만 하위법령에서 그 구체적인 조직구성이나 운영방안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러한 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는 경우에 국가로부터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런데 범부처적인 성격을 띠는 기후변화협의체를 일개 행정부처의 내부규정으로 규율하게 될 경우 그 협의체는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법에 기

36) 기상법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반한 조직으로 격상시킴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V. 결론

현행 「기상법」은 국가기상행정 업무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기본법의 성격과 일반 업무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하나의 성격에도 충실하지 못한 불완전한 법이 되고 있다는 데 찾을 수 있다. 「기상법」에서 기상관련 사항을 제·개정하는 경우에 항상 고려하여야 할 지침적이고 근본 규범임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타 부처 법령에서 상황적 필요에 따라서 「기상법」을 고려함이 없이 기상관련 사항을 입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처 간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 왔다. 따라서 「기상법」 제3조 다른 법과의 관계 규정 방식을 소극적 규정 방식에서 적극적 규정방식으로 변경하여 기본법성을 명확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상청 소관업무와 타 부처 업무의 중복 또는 충돌이나 타 법률상 규정된 기상청장의 의무규정 등은 대개 기상청 소관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고 있음을 볼 때 「기상법」의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상업무와 관련하여 「기상법」 제2조 제8호의 한 호로만 추상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기상업무인 관측,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응용기상 영역의 다양한 기상서비스 현상들을 「기상법」에서 정의하고 업무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상청의 업무 범위의 명확화 내지 기상업무의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서라도 여러 부처의 법령에서 산재해 있는 기상청장의 업무 내지 의무와 관련된 규정은 「기상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상청의 업무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기상청 소관업무상 관측 및 예측과 관련된 사항을 기상청의 고유한 사무로 하여 기상현상의 관측 및 예측의 측면을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상청의 업무는 어디까지나 관측 및 예측자료의 생산에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각 부처의 소관으로 맡겨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상관련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을 고려하여 부처 간의 이기주의에 근거하여 관련 정보 내지 업무의 배타적 독점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범부처간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12. 3. 31.    심사일 : 2012. 4. 17.    게재확정일 : 2012. 4. 21.

## 참고문헌

- 기상청, 일본의 기상정보 상업화정책 동향과 실태, 1997
- 기상청, 국가기상기술로드맵(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자료), 2007.
- 기상청,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2006.
- 김광식, 기상학사전, 연문사, 2009.
- 김동희, 행정법 I (제12판), 박영사
- 김철용, 행정법 I (제9판), 박영사
- 김치환, 기상산업진흥 관련 외국입법례와 시사점, 공법연구 제36권 1호, 2007.
- 김현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법연구 제39집 제2호, 2010/12.
- 박균성, 행정법(상)(제5판), 박영사
-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 박정훈, 입법체계상 기본법 본질에 관한 연구-일본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법조, 2009/12.
- 법제처, 법령해석례, 2004. 12. 21
- 양일규,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제1회 기상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포럼, 2009.
- \_\_\_\_\_, “우리나라 기상산업현황과 육성방안”, 2006.
- \_\_\_\_\_, 기상산업 육성과 기상청의 역할, 21세기 전략산업인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제 공청회 자료집, 2008.
- 일본기상청, 기상청방재업무계획, 2004.
- 정덕훈, 국가재해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향, 「방재연구」 제5권 제2호.
- (재)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산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 2006. 6. 30
- 한국행정연구원,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기상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2002
- 항공기상청, 「항공기상업무지침」 제8차 개정판, 2010.
- “항공작전사령부-항공기상청, 업무협약 체결”, 동부중앙신문(주), 2011. 8. 5.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신5판), 박영사, 2010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0

\_\_\_\_\_,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0

황승흡, 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이동, 청소년 분야 통합·분리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9. 3.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COMMISSION FOR AERONAUTICAL METEOROLOGY, "TRAINING AND QUALIFICATION IN AERONAUTICAL METEOROLOGY, Aviation Forecaster Qualifications", CAeM-XIV/Doc. 5(2). 2010. 2.

<http://web.kma.go.kr>

<http://edu.klaw.go.kr/StdInfInfoR.do?astSeq=7>

<http://www.law.go.kr/admRulAstSc.do?schType=0&menuId=9&dataCls=lsAstSc&query=&cptOfiCd=1360000&tabNo=3#cptOfi1360000>

[http://web.kma.go.kr/notify/information/law\\_notice\\_list.jsp](http://web.kma.go.kr/notify/information/law_notice_list.jsp)

[http://www.bmvbs.de/DE/DasMinisterium/GeschaeftsbereichDesBMVBS/geschaeftsbereich-des-bmvbs\\_node.html](http://www.bmvbs.de/DE/DasMinisterium/GeschaeftsbereichDesBMVBS/geschaeftsbereich-des-bmvbs_node.html)

[http://www.dwd.de/bvbw/appmanager/bvbw/dwdwwwDesktop?\\_nfpb=true&\\_pageLabel=dwdwww\\_start&\\_nfls=false](http://www.dwd.de/bvbw/appmanager/bvbw/dwdwwwDesktop?_nfpb=true&_pageLabel=dwdwww_start&_nfls=false)

[www.wmo.int](http://www.wmo.int)

**[Abstract] Abstract**

The problems and reform on current Weather Act

Wook Jang

As the demand of meteorological service is gradually increased in these day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reorganize meteorological legislation for providing the data and service related to the weather and climate effectively. Nevertheless because Weather Act, the basic act in legislations related to meteorological phenomena, is not organized, th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s not performing its affairs efficiently. Thus I analyzed the problems of weather act and suggested a revised bill in this study. Although weather act has both natures as the basic act for weather and the general service act for weather, the most important problem of weather act does not satisfy either of its natures and become incomplete act. So meteorological act should be revised to strengthen the nature of basic act and to regulate services of th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ore specifically. Especially the contents for meteorological service should be enacted in a separate chapter and concretely by the types of it(aeronautical meteorological service, marine meteorological service, hydro-meteorological service, space meteorological service). When the director of th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equests meteorological inform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to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a current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into a compulsory to submit data to him. Because regulations related to weather are scattered in the act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re are the conflict of affairs among the relevant authorities. Thus it is necessary to be regulated systematically in weather act. Finally it is necessary for directives and guidelines in th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o be reorganized systematically. Matters related to simple administration can be stipulated in the directives. On the other hand, important matters related with affairs of th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hould be stipulated in the statute.

주 제 어 기상서비스, 기상기본법, 기상법, 기상업무법, 기상훈령 및 지침

Key Words meteorological service, the basic act for weather, weather act, the general service act for weather, directives and guidelines in th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